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5 발의연월일: 2020. 12. 18.

발 의 자:김선교·정찬민·윤창현

정진석 • 이만희 • 김예지

안병길 · 권성동 · 정운천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, 공 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,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

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4항 단서 중 "공직자가 자기 직무"를 "공직자의 자기 직무 또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① ~	제68조(포상 및 보상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	4
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	
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	
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	
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	
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	
한다. 다만, <u>공직자가 자기 직</u>	<u>공</u> 직자의 자기 직무
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	또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
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	직기간 중 자기 직무
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